

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4. 1. 16 .

제안자 : 강 홍식의원의외 2 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법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임.

2. 주요골자

- 의정활동비 지급(안 제2조),
 - 의정자료 수집·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로 월 550,000원씩 지급되던것을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 월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,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급함
- 출석일수 계산(안 제4조)
 - 『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직무로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석 한것으로 본다』를 신설함.
- 준용규정(안 제6조)
 - 『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계룡시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』를 『계룡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』로 수정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2조, 동법 시행령 제15조.

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중 “의정자료 수집·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로 월 550,000원”을
“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 월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,000원”으로
한다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제4조 (출석일수 계산)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직무로 의원
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“제4조”를 “제5조”로 한다

“제5조(준용)”을 “제6조(준용규정)”으로하고 조문중 “계룡시 소속공무원의 예에
따른다”를 “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”로 한다

부 칙<제 호 04. 1. 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2004년도 1월
1일부터 적용한다

별표3중 의원의 일비란 다음과 같이 한다. 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일 비 (1인당)
의 원	30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원 안			개 정 안		
제2조 (의정활동비 지급) ①의원에게는 의정자료 수집·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로 월 550,0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(신 설)			제2조 (의정활동비 지급) ①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 월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,0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 제4조 (출석일수 계산)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직무로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<신설 04. 1. .>		
제4조 (여비지급)			제5조 (여비지급)		
제5조 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계룡시 소속공무원의 예에 따른다.			제6조 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.<개정 04. 1. .>		
[별표3]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			[별표3]의 국외여비지급 기준표		
구 분	항 공 운 임	일 비 (1일당)	구 분	항 공 운 임	일 비 (1일당)
의 원	2 등 정 액	20	의 원	2 등 정 액	30

계룡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2003. 11. 20. 조례 5 호

개정 2004. 1. . 조례 호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룡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의정활동비 지급) ①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로 의정자료 수집·연구비 월 900,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00,000원을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<개정 04. 1. .>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3조 (회기수당 지급) ①회기수당의 지급은 별표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, 회기중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.

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한다.

제4조 (출석일수 계산) 회기중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직무로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<신설 04. 1. .>

제5조 (여비지급) ①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. 다만,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의 2분의1을 지급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여행할 때에는 별표3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.

③의원의 국내·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제6조 (준용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계룡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준용한다.<개정 04. 1. .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 호 2004. 1. 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조 제1항의 규정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

[별표 1]

회기수당 지급기준표(제3조 관련)

지급기준	회기수당
의원 1인	일 70,000원

[별표 2]

국내여비지급 기준표 (제4조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임	현지 교통비 (1인당)	숙박비 (1야당)	식비 (1일당)
의장 부의장	1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46,000	25,000
의원	2등급	2등정액	정액	정액	10,000	25,000	18,000

비고 :

1. 의회소재지내에서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2. 자동차 운임 및 항공운임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·허가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3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4.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

국외여비지급 기준표 (제4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미불화)

구 분	항 공 운 임	일 비 (1일당)	숙 박 비 (1야당)	식 비 (1야당)	준 비 금		
					15일 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 이상
의 장 부의장	1 등 정액	35	가등급166 나등급120 다등급 92 라등급 79	가등급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	140	170	195
의 원	2 등 정액	30	가등급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	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	130	155	180

비고 : 1.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.

가. 가등급 : 동경, 뉴욕, 런던, 로스엔젤레스, 모스크바, 샌프란시스코, 워싱턴, 파리, 홍콩

나. 나등급

(1) 아시아주·대양주 : 대만, 북경, 싱가포르, 우즈베키스탄, 인도, 일본

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멕시코, 미국, 브라질, 세이셸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키츠네비스츠, 아르헨티나, 아이티, 자메이카, 캐나다

(3) 유럽주 :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덴마크, 독일, 러시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아이슬란드, 영국, 오스트리아, 우크라이나, 이탈리아, 체코, 프랑스, 핀란드, 헝가리

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가봉, 남아프리카공화국, 수단, 아랍에미리트, 오만, 우간다, 코트디부와르, 콩고민주공화국, 쿠웨이트

다. 다등급

(1) 아시아주·대양주 : 뉴질랜드, 마셜군도, 말레이시아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브루나이, 아제르바이잔, 오스트레일리아, 인도네시아, 중국, 카자흐스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터키, 파키스탄, 파푸아뉴기니, 필리핀

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가이아나, 니카라과, 도미니카공화국, 바베이도스, 벨리즈, 세인트빈센트, 안티구아바부다, 우루과이, 칠레, 코스타리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파나마

(3) 유럽주 : 그리스, 리투아니아, 불가리아, 아일랜드, 알바니아, 유고슬라비아,

포르투갈, 폴란드
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니제르, 라이베리아, 리비아, 모리시어스, 모잠비크, 바레인, 보츠와나, 부르키나파소, 사우디아라비아, 상토메프린시페, 시에라리온, 요르단, 이란, 이스라엘, 이집트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카메룬, 카타르, 케냐, 탄자니아

라. 라등급

- (1) 아시아주·대양주 : 네팔, 라오스, 마이크로네시아, 몽골, 미얀마, 스리랑카, 캄보디아, 피지
- (2) 남·북아메리카주 : 과테말라, 베네수엘라, 볼리비아, 수리남, 에쿠아도르, 엘살바도르, 콜롬비아, 파라과이, 페루
- (3) 유럽주 : 몰도바, 보스니아-헤르체코비나, 에스토니아, 크로아티아
- (4) 중동·아프리카주 : 가나, 감비아, 기네비스, 기니, 나미비아, 나이지리아, 레바논, 레소토, 르완다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로코, 모리타니아, 세네갈, 소말리아, 스와질랜드, 알제리, 예멘, 이디오피아, 이라크, 잠비아, 짐바브웨, 튀니지

2.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.